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16
----------	------

발의연월일 : 2005. 12. 12.

발 의 자 : 김정훈 · 엄호성 · 유승민
윤건영 · 박세환 · 김기현
임해규 · 이혜훈 · 박형준
박재완 · 이인기 · 이근식
고조홍 · 최구식 · 이계경
전여옥 · 안상수 · 고경화
이성권 · 이재오 · 신국환
의원(2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구분 없이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험생이 미성년자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대학입학전형자료의 일부인 점을 고려한다면 조직적부정행위자가 아닌 단순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당해시험만을 무효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이의 제재조치도 달리하여 법적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단순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에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되, 이들 행위의 범위와 그 행위로 볼 수 있는 소지물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4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서 단순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순한 부정행위 및 조직적인 부정행위의 범위와 그 행위로 볼 수 있는 소지물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제7항의 신설규정은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2005년 11월 시행)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34條(學生의 選拔方法) ① ~ ③ (생 략)</p> <p>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p> <p>⑤ (생 략)</p> <p>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자가 응시자격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4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p> <p><신 설></p>	<p>第34條(學生의 選拔方法)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서 단순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p> <p>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순한 부정행위 및 조직적인 부정행위의 범위와 그 행위로 볼 수 있는 소지물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